

**조직개편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
일괄개정규칙안**



하 남 시 의 회

조직개편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58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월 20일

발의자 : 오지연 의원

1. 제안 이유

우리시 행정조직의 개편(시행 2023. 1. 1.)으로 우리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변경

3. 개정규칙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. 27. ~ 2. 2.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조직개편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

제1조(「하남시의회 회의규칙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89조제1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, “의회사무과”를 “의회사무국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“사무과장”을 각각 “사무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,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회사무과장”을 각각 “의회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의회사무과장”을 각각 “의회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의회사무과장”을 “의회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사무과”를 “사무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단서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하남시의회 회의규칙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등록) 하남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<u>사무과장</u>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등록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무국장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의석배정) ① (생략)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<u>사무과장</u>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p>	<p>제3조(의석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사무국장</u> ----- -----.</p>
<p>제54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회의록에는 의장·의장을 대리한 부의장·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<u>사무과장</u>이 서명 날인한다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.</p>	<p>제54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무국장</u> -----.</p>
<p>제89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<u>사무과장</u>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.</p>	<p>제89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----- ----- <u>사무국장</u> ----- -----.</p>

<p>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사무과장</u>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계양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<u>사무과장</u>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p> <p>④ 제3항의 경우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상일 때에는 <u>사무과장</u>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사무과장</u>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계양한다.</p>	<p>----- <u>사무국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사무국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 <u>사무국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사무국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
---	--

4.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)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에 명예퇴직원(별지 제2호서식)을 첨부하여 <u>의회사무과장</u>을 거쳐 하남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의회사무과장</u>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</p>	<p>제4조(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의회사무국장</u>-----</p> <p><u>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 <u>의회사무국장</u>-----</p> <p>-----</p>

<p>은 것으로 본다.</p> <p>제8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) ①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<u>사무과장</u>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-----.</p> <p>제8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) ①----- ----- ----- <u>사무국장</u>----- -----.</p>
<p>제13조(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) 제12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에 조기퇴직원(별지 제4호서식)을 첨부하여 <u>의회사무과장</u>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의회사무과장</u>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3조(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회사무국장</u>----- -----. ----- <u>의회사무국장</u>----- -----.</p>

5.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적용의 범위) 의장, <u>사무과장</u>, 전문위원, 의회운영담당 및 사무직원은 법령에 따로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사무를 전결 처리한다.</p>	<p>제2조(적용의 범위) --- <u>사무국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제3조(사무분배의 원칙) ② <u>사무과장</u> 의 전결사항	제3조(사무분배의 원칙) ② <u>사무국장</u> -----
제4조(전결대상사무) ① <u>사무과장</u> 의 전결처리 사항은 (별표)와 같다.	제4조(전결대상사무) ① <u>사무국장</u> ----- ----- ---

6.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범위)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,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. 다만,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	제2조(적용범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(생략) 2. <u>의회사무과장</u>	1. (현행과 같음) 2. <u>의회사무국장</u>
제5조(인계인수서 작성부수) 사무인계인수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<u>사무과</u> 에 보관하여야 한다.	제5조(인계인수서 작성부수) --- ----- ----- ----- <u>사무국</u> ----- -----
제7조(사무인계서 작성단위) ① · ② (생략)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	제7조(사무인계서 작성단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

며, 확인자는 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.

제8조(사무인계인수의 입회) ①
(생략)

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.

----- 사무국장 -----
-----.

제8조(사무인계인수의 입회) ①
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.
----- 사무국장-----.